

법무부령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정안

기 관 명 (부 서 명)	법무부 (형사법제과)
연 월 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제정이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850호, 2020. 2. 4. 공포)에 따라 영장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는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심의 위원 후보로 구성된 후보단 중에서 심의 신청 시마다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9명의 심의 위원을 선정해 구성하고, 위원장은 전체 후보단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규정(안 제3조)

나. 심의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한 규정(안 제5조 내지 제7조)

- 1)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등이 있거나, 검찰이나 경찰에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은 위원장이나 후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규정
- 2) 위원장이나 후보 위원 위촉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 등이 있는 경우 고

등검찰청 검사장이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

- 3) 위원장 또는 심의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와 관련이 있는 등 공정성을 의심받을 사유가 있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고, 심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도록 하며,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다.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은 검사 등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에 관한 영장 심의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 (안 제10조)

라. 영장심의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사, 사법경찰관의 의견서 제출, 심의 참석 및 의견 개진을 보장하고,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의인 경우에는 피의자나 변호인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15조 내지 제17조, 제19조)

마. 심의위원회의 영장 청구 적정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도록 규정 (안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0. 11. 17. ~ 12. 28.) 예정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 협의 예정

영장심의위원회 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21조의 5제5항에 따라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법 제221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영장 청구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법 제221조의5제1항의 심의 신청 대상인 ‘영장’이란 다음과 같다.

1. 체포·구속영장
2. 압수·수색·검증영장
3.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허가서
4. 기타 사법경찰관이 관련 법률에 의하여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21조의5제2항에 따라 각 고등검찰청에 위원회를 둔다.

② 법 제221조의5제3항에 따라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심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위원회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등검찰청에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심의 위원 후보(이하 ‘후보 위원’이라 한다)로 구성된 후보단(이하 ‘후보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 ④ 후보 위원은 사법제도 등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 ⑤ 위원장은 후보 위원들이 선출하고,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 ⑥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은 후보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으며, 특정 직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⑦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은 법 제221조의5제1항에 따른 심의가 신청될 때마다 후보단 중에서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9명의 심의 위원을 위촉한다.
- ⑧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은 제6항에 따라 심의 위원을 위촉하기에 앞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약서에 따라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② 후보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및 후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2. 정당에 가입한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정식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

4. 검사 등 검찰청 소속 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 등 수사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재직·종사 중인 사람

제6조(위원장 등의 해촉) ①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소속 위원회 위원장 또는 후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 또는 해당 후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한 경우

2. 정치·사회적으로 편향된 언행이나 개입으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후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②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소속 위원회 위원장 또는 후보 위원의 위촉에 앞서 제5조 각 호의 사유가 있었음이 발견되거나 임기 중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 또는 해당 후보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제척·회피·기피) ① 위원장 또는 심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제5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피의자, 피해자, 고소·고발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인 경우
 3. 제2호의 사람과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경우
 4. 제2호의 사람의 법정대리인, 대리인, 변호인(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 소속인 경우 해당 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인을 포함한다), 보조인이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경우
- ② 위원장 또는 심의 위원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거나 제1항제2호의 사람 또는 해당 사건의 수사나 영장의 신청·청구 여부의 결정에 관여한 사람과 친분관계, 대립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③ 심의를 신청한 사법경찰관과 해당 사건의 영장을 담당한 검사(이하 ‘담당 검사’라고 한다)는 위원장 또는 심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⑤ 제4항의 의결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회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대행자는 위원회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고등검찰청 소속 검사 중에서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검찰사무관으로 하여금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심의안건 요지서 작성 등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위원장의 요청이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견 등을 표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영장청구 여부 심의에 대한 공정성 유지)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은 위원회의 운영, 구성에 있어 검사 등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에 관한 영장의 심의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장 위원회 개최 및 심의

제11조(심의 신청 절차) ① 법 제221조의5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검사가 보완수사요구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결정서가 해당 경찰관서에 접수된 날(다만, 사법경찰관이 동일한 영장에 대하여 2회 이상 보완수사요구를 받아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추가로 재차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때)

2.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날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이 경과하도록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장 신청일(검사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요구 이행 결과 서면을 검찰청에 접수한 날)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이 경과한 때{다만, 영장을 신청한 사법경찰관과 협의하여 영장 신청일로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의 범위에서 영장 청구 여부 결정 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그 연장일이 경과한 때}

③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원본 및 부분 각 1부와 사건기록 등본 2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장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은 영장을 담당한 검사와 합의된 경우에는 사건기록의 일부만을 등본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심의 신청 당시 검사가 사건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

찰관에게 신속히 사건기록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 신청의 철회) ① 사법경찰관은 위원회 회의 개최일 전일(근무일 기준)까지 관할 고등검찰청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심의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심의 신청이 철회된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제11조에 따른 심의 신청 후 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심의의 대상인 영장과 동일한 내용(범죄사실 또는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의 범위가 추가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영장을 검사에게 다시 신청한 경우 위 심의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경우 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이 그 사실을 관할 고등검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절차의 종료) 사법경찰관이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의를 신청한 후 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검사가 심의의 대상인 영장을 청구한 경우 심의절차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신청 접수 통지 등) ① 심의 신청이 접수되면 위원회 간사는 지체없이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위원장과 담당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이하 ‘해당 검찰청의 장’이라 한다)에게 각 통보하고 해당 검찰청에 신청서 부분, 사건기록 등본, 제16조제2항의 의견서 부분을 송부한다.

② 접수된 심의 신청의 대상이 구속영장인 경우 위원회 간사는 지체없이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보한다.

③ 간사는 접수된 신청서, 사건기록 등본 및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심의안건 요지서 등 회의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검사의 의견서 제출 등) ① 담당 검사는 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검사는 의견서 원본 및 부분 각 1부 또는 출석 의사를 명시한 서면을 제14조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법경찰관의 의견서 제출 등) ① 사법경찰관은 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사법경찰관은 의견서 원본 및 부분 각 1부 또는 출석 의사를 명시한 서면을 제11조제3항의 서류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피의자·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① 제14조제2항의 통보를 받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의견서 원본 및 부분 각 1부를 제14조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개최일이 정해진 때에는 간사는 지체없이 담당 검사와 심의를 신청한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그 사람)을 포함한 심의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7조에 따라 심의 위원이 제척 또는 회피·기피 결정된 경우에도 개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9조(의견개진 등) ① 해당 안건의 영장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영장 신청의 검토 또는 결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이 경우 수사기록에 명백히 현출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출석한 검사, 사법경찰관에게 질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함께 출석한 경우 의견개진 및 질의는 분리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④ 제43항의 경우 의견개진 및 질의는 사법경찰관, 검사의 순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원들이 그 취지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심의·의결) ① 위원회의 영장 청구 적정 의결은 출석위원(위원장 및 그 직무대행자는 제외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③ 위원회의 영장 청구 여부에 관한 심의는 검사의 영장 기각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각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심의의견서) ① 위원회는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영장심의위원회 심의의견서’(이하 ‘심의의견서’라고 한다)를 작성한다.

② 심의의견서의 ‘심의의견’란에는 영장 청구 적정 여부를 기재하고, 심의·의결에 참여한 위원장과 위원들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의견을 가진 위원은 본인의 의견과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심의의견서 뒤에 첨부할 수 있다.

제22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회의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등 참석자
3. 심의사항
4. 심의 위원 발언 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심의 결과 통보 등) ①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은 해당 검찰청의 장과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심의 결과 및 각 심의의견별 위원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이를 수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4조(재신청의 제한) 사법경찰관은 위원회의 심의가 있거나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 신청이 철회된 경우에는 심의대상이 되었던 영장과 동일한 내용의 영장에 대하여 다시 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심의 신청 이후 영장청구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증거가 새로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심의 비공개 등) ① 누구든지 위원회의 심의 여부 및 내용, 심의 대상 사건 관련 사항, 심의의견서 등 관련서류 및 위원회 위원 명단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대상 관련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공개 여부를 의결한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위원회의 위원 명단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건관계인 또는 수사 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오보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신속하게

그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한 경우

2. 영장심의 관련 사실이 이미 언론에 공개되어 심의대상 관련 사항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제3장 보칙

제26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수사사항 등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위촉시 유의사항) ① 위원장 및 후보 위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후보단 구성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28조(수당 등) 각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은 위원회 심의에 참여한 위원장과 심의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기타 사항)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 훈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 중 시행일 이후 검
찰청에 접수된 영장부터 적용한다.

서 약 서

직위 : ○○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후보 위원

성명 :

위 본인은 ○○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후보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2. 정당에 가입한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정식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
4. 검사 등 검찰청 소속 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 또는 경찰 공무원 등 수사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재직·종사 중인 사람
5. 해당 안건의 피의자, 피해자, 고소·고발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인 경우
6. 제5호의 사람과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경우
7. 제5호의 사람의 법정대리인, 대리인, 변호인(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 소속인 경우 해당 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인을 포함한다), 보조인이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경우
8. 제5호의 사람 또는 해당 안건의 수사나 영장의 신청·청구 여부의 결정에 관여한 사람과 친분관계, 대립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장심의위원회 심의신청서

수 신 : ○○고등검찰청

○○경찰서 제 0000-000000 호 피의자 ○○○외 ○명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았는바, 위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합니다.

- 다 음 -

사건 및 영장	피 의 자	성명 : 생년월일 :
	경찰 사건번호	○○경찰서 제 0000-000000 호
	죄 명	
	영장의 종류	
영장 신청일		
신청 사유		☐ 제11조 제2항 제1호 본문 (영장 불청구 결정서 접수일 0000. 00. 00.) ☐ 제11조 제2항 제1호 단서 (추가 보완수사요구 접수일 0000. 00. 00.) ☐ 제11조 제2항 제2호 본문 (영장신청일로부터 5근무일 경과일 0000. 00. 00.) ☐ 제11조 제2항 제2호 단서 (영장 청구 여부 결정기한 연장일 0000. 00. 00.)
신청 이유		

※ 첨부 자료 : 신청서 부분 1부, 사건기록 등본 2부.

신청인 ○○경찰서 사법경찰관 (인)

영장심의위원회 심의신청철회서

수 신 : ○○고등검찰청

○○경찰서 제 0000-000000 호 피의자 ○○○외 ○명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신청을 철회합니다.

- 다 음 -

사건 및 영장	피 의 자	성명 : 생년월일 :
	경찰 사건번호	○○경찰서 제 0000-000000 호
	죄 명	
	영장의 종류	
심의 신청인		
심의 신청 일시		
심의 신청 철회 일시		

신청 철회인 ○○경찰서 사법경찰관 (인)

영장심의위원회 심의신청 접수통보

수 신 : ○○○(○○○의 변호인 변호사 ○○○)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가 신청되었는바, 이를 통보합니다.

- 다 음 -

사건 및 영장	피 의 자	성명 : 생년월일 :
	경찰 사건번호	○○경찰서 제 0000-000000 호
	죄 명	
영장 신청일		
심 의 신청일		

※ 귀하는 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우리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의견서 및 영장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영장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일시가 확정되는 즉시 귀하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 ■ ■

○○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간사 검사

(인)

심 의 안 건 요 지 서

1. 심의안건 개요

2. 심의대상 영장

3. 검사·사법경찰관 등 의견요지

○ 사법경찰관 의견 요지

-

○ 검사 의견 요지

-

○ 피의자·변호인 의견 요지

-

4. 쟁점

5. 참고사항

영장심의위원회 심의의견서	
사건번호	
피의자	
죄명	
담당 검사	
신청 사법경찰관	
심의대상 영장유형	
심의사건 내용	별지 「심의안건 요지서」와 같음
심의일자	. . .
투표결과	영장 청구 적정(명), 부적정(명), 기타(명)
심의의견	영장 청구 적정 (가 / 부)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영 장 심 의 위 원 회 심 의 결 과 통 보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 ○○경찰서장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에 대한 □□(영장, 허가서, 강제 처분)에 관하여 신청한 영장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다 음 -

사건 및 영장	피 의 자	성명 : 생년월일 :
	사 건 번 호	○○경찰서 제 0000-000000 호 ○○지방검찰청 제0000-000000호(영장 접수 번호)
	죄 명	
심의 결과 (심의의견별 위원 수)		영장 청구 적정 / 영장 청구 부적정 (적정 : 00명, 부적정 : 00명)

○○고등검찰청 검사장 (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본인이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형사재판 계속 중이다.	예 ()	아니오 ()
2	○○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다른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아니오 ()
3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의무 관계의 변동 또는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 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아니오 ()
※ ‘예’ 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직무윤리 서약서

직위 : ○○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장 / 후보단 구성 위원)

성명 :

위 본인은 ○○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장 / 후보단 구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업무 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지 않을 것 (언론 등 외부공개 금지)
2.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3.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4.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이나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등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7조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할 것
5.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 또는 청탁·알선 등을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6. 그 밖에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	
연 락 처	(02) 2110 - 3712